

April 01, 20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 입법예고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절차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은 2015년 7월 31일 제정되어, 금년 8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추어, 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2016년 3월 17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입법예고 기한(4월 26일)이 경과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7월 내에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고, 지배구조법과 같은 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제정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각자 적용 받게 되는 지배구조법상 의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각 회사의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지배구조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지배구조법은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통하여 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은 3천억원 미만, 금융투자업자(단, 운용 자산 20조원 이상은 제외)·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조원 미만인 경우 지배구조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며, 이 경우 사외이사 구성(3인 이상이면서 과반수),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성과보수 체계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지배구조법 제3조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나.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i) 영업인가 취소·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의 책임자에 대하여 냉각기간을 5년으로 하고, (ii) 기타 임직원 제재 조치자의 경우 그 냉각기간을 해임(면직요구) 5년,

직무정지(정직요구) 4년, 문책경고(감봉요구) 3년으로 하며, (iii)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건전경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추가 결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또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와 주요 거래관계(거래 실적·매출총액·여신거래, 법률·경영 자문, 사업상 계약 등)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 또는 법률·경영 자문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외이사의 적극요건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및 임원의 겸직 제한 관련

지배구조법시행령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임면해야 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전략기획(CSO), 재무관리(CFO) 및 위험관리(CRO)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 또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상근임원의 겸직 가능 범위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고객 이해상충·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고객 이해상충·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 등에 대한 겸직 가능 범위를 추가하고, 일부 사전승인 대상(CEO,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제외하고는 반기별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라. 소규모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상근감사 선임 등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저축은행은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선임하면 됩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마. 보수위원회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저축은행은 3천억원 이상)는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임원과 증권·파생상품의 설계·운용·판매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으로 정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할 것 등)를 마련하며,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일정비율을 이연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항목으로서 임원 유형별 보수 총액,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성과 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회사로서 투자자문, 투자일임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일임재산 합계가 5천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하되, 저축은행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사. 대주주 변경승인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대상 외에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추가하고(반면 전문사모투자집합업자·클라우드펀딩업체 등의 대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심사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아.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을 2년(필요 시 수시 심사)으로 하고, 적격성 심사시 심사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세부 심사요건(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정하며, 부적격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기간(최대 5년),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사유 외에 추가사유(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상기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태용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96	E-Mail. tyseo@shinkim.com
● 신진영 변호사	TEL. 02 316 1692	E-Mail. jyshin@shinkim.com
● 박희영 변호사	TEL. 02 316 1699	E-Mail. hyopark@shinkim.com